

(붙임)

주식 매매 주문정정내역 자체점검결과 통보

회사명	메리츠자산운용		확인(서명)
작성자	부서: 컴플라이언스팀	직위: 대리	(인)
확인자	준법감시인		
	TEL: 6320-3093	성명: 최재형	
	TEL: 6320-3091	성명: 권순찬	

□ 작성양식

최초 주문 작성일	정정전 계좌번호	정정 전 계좌명	정정 처리일	정정후 계좌번호	정정후 계좌명	종목명	수량	단가	거래대금			
2011.07.18	솔로몬증권 014-01-74618	신한생명(메리츠2010-1)	2011.07.19	-	증권사 상품	휴웬스	20	27,800	556,000	매도	계좌 착오 (운용역이 일임계좌에서 보 유중인 휴웬스에 대하여 사전배발/매 도 주문 요청하였으나, 트레이더의 착 오로 다른 계좌에서 주문·체결됨. 이에 공매도로 처리되어 해당 증권사에서 상 품으로 협조해줌)	구두 주의 촉구
2011.07.01	비로투자증권 001-01-000601	메리츠자산운용(과세)	2011.07.04	-	증권사 상품	LS네트웍스	4	5,140	20,560	매도	종목 착오 (운용역이 'LS네트워크상환 우선주'에 대하여 사전배발/매도주문 요청하였으나, 사전배발 시스템상 글자 수 제한으로 트레이더가 'LS네트웍스 (보통주)'로 착오 주문. 이에 공매도로 처리되어 해당 증권사에서 상품으로 협 조해줌)	구두 주의 촉구

□ 작성방법

1. 자체점검 대상 : 운용자산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(2009.2.4.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) 주식 매매거래가 체결 된 이후에 자산운용사·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 요청하여 최초 주문 계좌와 다른 계좌로 거래를 정정한 내역
* 2011.12월 중 우리원의 요청에 따라 자체점검을 기 실시한 주문정정내역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
2. 결과통보 대상 : 자체점검한 주식 매매 주문정정 내역 중, 법규위반 사항(불건전 거래)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정정건
* 자체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정정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역까지 통보
** 정정사유, 관련법규 및 조치내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(작성예시 참고)
3. 관련법규 : 자본시장법 80조· 시행령 79조· 시행규칙 9-10조 및 자본시장법 85조, 자본시장법 98조 등(관련 간투법 포함)
4. 특이사항 예시 :
 - 일임펀드의 유동성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임펀드의 주문을 투자신탁펀드로 이전
 - 펀드의 보유수량을 초과한 매도주문이 발생하여 공매도 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문 정정
 - 뮤추얼펀드 별로 거래체결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매매 미세결 펀드에 일부 수량을 배정할 경우 등
 * 위의 관련법규 및 특이사항 예시를 참고하여 법규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문정정내역은 모두 기재

□ 결과통보 방법

1. 제출기한 : 12.4.30(금)
2. 제 출 : 자체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은 동 파일(스캐파인) 및 조치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시스템(EDES)을 통해 회신
* 주식 매매 주문정정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거나 자체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,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하여 이메일로 회신 요청 (황인옥 검사직, hwanginwook@fss.or.kr)

□ 작성문의

자산운용검사실 검사기획팀 홍순간 수 석(3145-7662)
황인옥 검사직(3145-7696)